## 문학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9579 발의연월일: 2025. 4. 3.

발 의 자 : 임오경 · 임미애 · 신영대

김윤덕•박 정•한병도

이기헌 • 조계원 • 윤준병

김재원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문학진흥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문학 진흥 관련 인프라 구축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법률에 '인프 라'라는 외국어를 사용하고 있음.

그런데 「국어기본법」은 공문서 등을 알기 쉽고 어문규범에 맞게 한글로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인프라'는 국립국어원의 표준 화 대상어이고 법제처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서 정비 대상 외국어로 선정한 바 있음.

이에 외국어인 '인프라'를 국립국어원의 표준화 용어인 '기반시설'로 변경함으로써 국민이 법률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2항제5호).

법률 제 호

## 문학진홍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학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5호 중 "인프라"를 "기반시설"로 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문학진흥기본계획의 수립	제5조(문학진흥기본계획의 수립		
•시행 등) ① (생 략)	·시행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②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문학 진흥 관련 <u>인프라</u> 구축	5 <u>기반시설</u>		
에 관한 사항			
6. ~ 10. (생 략)	6. ~ 10. (현행과 같음)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